이동식 크레인 작업대가 꺾이면서 떨어짐

재 해 개 요

'16. 11월 경북 포항시 소재 사업장의 천장크레인(5톤) 설치 현장에서 피재자가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에 탑승하여 호이스트 조정 작업 도중 호이스트가 작업대로 떨어져 작업대가 꺾이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기인물(이동식크레인)



작업대로 떨어진 호이스트

재해발생상황

- 재해는 이동식 크레인(10톤) 작업대에 탑승하여 천장크레인 횡행레일에 매달려 있던 호이스트(5톤)의 횡행휠 간격을 조정하던 중 발생함
 - ※ 작업대(탑승설비)
 - 규격 : (가로)180cm×(세로)100cm×(높이)95cm, 적재하중 : 200kg(제작자표기)
- 이동식 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로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면제 대상임
- 피재자가 탑승했던 작업대는 임의제작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동식크레인 붐대 단부에 2개의 고정핀을 체결하여 설치함
 - 작업대의 전면부에는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였음
- 호이스트 횡행휠 고정볼트는 간격조정을 위해 풀려 있었던 상태로, 이 때 횡행휠 사이의 간격이 과다하게 벌어져 크레인 거더에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였음

재해발생 원인

- 횡행휠 사이의 간격이 과다하게 벌어져 횡행레일을 벗어나 이탈된 호이스트 (577kg)가 피재자가 탑승하고 있던 작업대(적재하중 200kg) 내부로 떨어지면서 충격하중(약 1,154kg)이 가해져 작업대가 꺾여 5m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함
- 이동식크레인의 붐대에 탑승이 금지된 작업대를 임의로 설치하여 고소 작업을 실시함

동종재해 예방대책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작업장 바닥에서 설계도서의 치수에 따라 횡행휠과 횡행레일의 간격을 조정하여 조립한 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주행레일에 안착시키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함

관련 법규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